

년도 [] 상반기 []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일반현황

①허가번호	②허가연월일
③상호 또는 법인명칭	④소재지
⑤대표자	⑥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⑦생년월일	⑧겸업내용

⑨사회보험가입현황

구분	산업재해보상보험	고용보험	국민건강보험	국민연금
가입번호				

⑩사업소 현황

사업소의 명칭	소재지	파견사업관리책임자

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(해당 반기 매출액 기재) 원

⑫파견근로자 교육훈련 실적

교육훈련명	실시인원	실시기간	교육훈련내용	교육방법(자체, 위탁)

2. 근로자 고용현황(상반기: 6월30일 / 하반기: 12월31일 기준)

①총근로자 수	②파견근로자 수
---------	----------

3. 근로자 파견실적(해당 반기 실적 기재)

①업무의 종류	②파견근로자 수	③사용사업주의 수	④월평균임금	⑤파견지역		
				국내	국외	
⑥합계						
⑦파견기간별 근로자 수	합계	3개월미만	3개월이상 6개월미만	6개월이상 9개월미만	9개월이상 1년이내	1년초과 2년이내

4. 사용사업주 현황

①상호 또는 법인명칭	②대표자	③사업자 등록번호	④전화번호	⑤소재지	⑥업무의 종류	⑦파견근로자 수

작성 방법

1. (제1호) 일반현황 관련

- ⑤대표자란에는 개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,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.
- ⑩겸업내용란에는 파견사업 외에 겸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란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상반기의 매출액을, 하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하반기의 매출액을 기재합니다.
- ⑫란의 "교육방법"은 "자체"와 "위탁"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2. (제2호)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

- ①란의 "총근로자 수"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,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.
- ②란의 "파견근로자 수"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.

3. (제3호) 근로자 파견실적 관련

- ①~⑥란은 업무별로 각각 기재하되 ①란의 "업무의 종류"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,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(시행령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)에는 「한국표준직업분류」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②란의 "파견근로자 수"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~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,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~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.
- ④란의 "월평균 임금액"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근로자 1인당 파견기간 중 월평균 임금액(8시간기준)을 기재하고, ⑤파견지역란에는 근로자파견을 한 지역별로(국내 또는 국외) 해당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.
- ⑦란에는 각 반기 중(상반기 또는 하반기)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자의 실제 파견기간을 산정하여 각 파견기간 별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.
 - ※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,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
 - (예) 파견계약기간을 2010.11.1. ~ 2011.10.31.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, 2011년 상반기 보고 시에는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의 실제 파견기간인 2010.11.1. ~ 2011.6.30.으로 계산(6개월이상 9개월미만에 해당), 2011년 하반기 보고 시에는 2010.11.1. ~ 2011.10.31.로 계산(9개월이상 1년이내에 해당)

4. (제4호) 사용자주 현황 관련

- ⑥란의 "업무의 종류"는 제3호 ①란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.

◇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◇ 음영처리 된 부분의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.(제3호 ⑥란 = 제3호 ⑦란 = 제4호⑦란의 합계)